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3조의3, 제65조의2, 제66조)

1) 법 제6조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3조의3제1항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되,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나 귀가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30일 전까지 송달할 필요성이 적거나 신속히 통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이미 복무를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통지할 필요성이 적고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는 사유에 추가하려고 함.

- 3) 사회복지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
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
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함을 명
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나.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 확대(안 제18조의2)

- 1) 법 제14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18조의2는 현역병입영대
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
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자
사·순직자의 자녀나 수형자 등 신체등급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보충
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어 그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는 신체
등급 외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이에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에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함.
- 3) 재병역판정검사의 실익이 적은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을 필수수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병무청장이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을 선정하도록 조정(안 제47조)

- 1) 이 영 제47조는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새로 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그 증감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2) 이에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병무청장이 행사하도록 함.
- 3)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선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65조의3 신설)

-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불가능하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요원이 제기하는 민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함.

마.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 개선(안 제68조)

- 1) 이 영 제68조제1항은 병무청장 등은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

의 장을 거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은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실시되어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병무청장 등이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하던 것을 병무청장 등이 직접 교부·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교육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송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그 효력발생시기 등을 규정함.

3)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이 개선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 개선(안 제68조의11제1항)

1)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 2명 이내에 해당하면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이 가장 높고 1위로 입상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국제예술경연대회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은 사전에 공지된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거나 비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 제한 (안 제85조)

1)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

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함.

3)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유출을 막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충역 등의 휴직기간 조정(안 제151조)

1) 국가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경우 승진 소요기간에 그 기간을 반영하되, 보충역 등의 경우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21개월로 정하고 있음.

2)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단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충역 등의 휴직기간도 18개월로 조정하려고 함.

자.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58조)

1)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려고 함.

2)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

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 명확화(안 제161조)

1) 이 영 제161조제1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지 11명으로 구성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함.

2) 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총 11명(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려고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2020. 8. 19. ~ 8. 31.)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9. ~ 9.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제109조제2항,”을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학력 사유, 법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5호 중 “국방부령으로”를 각각 “병무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 기관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2제3항 중 “해당 사회복지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를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의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지무요원에게 송달해야”로 한다.

제65조의3을 제65조의4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지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재지정원서의 처리결

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복무시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송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3.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은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회주최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및 제9항(중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할 수 없다. 이 경우 대기업 연구기관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1조 본문 중 “21개월”을 “18개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1개월”을 “18개월”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4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되,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제적 취약자는 병역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 ----- ----- ----- -----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 제109조제2항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학력사유, 법 제62조제1항제2호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①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 4. (생략)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설>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1. -----

----- 병무청

장이 -----

2. ~ 4. (현행과 같음)

5. -----

----- 병무청장
의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새
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의 근무
시작일 7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
무요원에게 송달해야 -----

야 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65조의3 (생략)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생략)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4 (현행 제65조의3과 같음)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된 사회복지요원 중 형의 선고
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사회복지요원에 대
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③ 삭 제

④ (생략)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이 경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복무
시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
달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14일 전까지 그 대상자에게 교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송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

3.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은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제5항까지-----

-----.

_____ •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전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할 수 없다. 이 경우 대기업 연구기관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⑥ (생략)

⑦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6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제7항

-----.

⑨ ----- 제7항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한정한다)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 18개월-----
--. ----- 18개월 ---

-----.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하되,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제적 취약자는 병역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명을 포함</u> <u>하여</u>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u>1명과</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137~9 (042) 481 - 2641